2024-1호(1. 31.)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ONBUK STATE COUNCIL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1.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 1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7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 12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4

□ 환경복지위원회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16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8

□ 농산업경제위원회

1. 「농어촌정비법」 ····· 20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3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6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0

□ 교육위원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33
2. 「온종일 돌봄체계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34

차 례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 37

Ⅳ. 법령 해석 사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제1항 등 관련) ····· 56
2.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62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완주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 67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관련) ····· 71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현대경제연구원) ····· 74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따른 지방행정의 검토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80
3. 2024년 국제정세 전망(세종연구소) ····· 86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에 나선다(전라남도) ····· 90
2. 고정밀 항공사진·영상 201건 자체 제작해 도정 업무 활용(충청남도) ····· 92
3. 전국 최초 자율담당제 본격 시행(경상남도) ····· 93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수산물 출하 전 신속검사를 위해 장비 및 인력의 합리적 배분 필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95
2.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점검 필요(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 98
3. 글로컬대학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재정지원 방식,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교육위) ····· 101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미비 관련 사항 ····· 105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8.] [전라남도조례 제5919호, 2023. 12. 28., 제정]

1. 제정이유

○ **전라남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전남형 만원주택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만원주택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8조).

- 만원주택:「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 사업대상지: 인구감소지역, 공업(산업)단지 등 청년층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다. 만원주택 입주자격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월 임대료: 1만원, 거주기간: 청년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라. 지원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청년: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나. 신혼부부: 부부 모두 청년이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2. “전남형 만원주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청년층에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완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방향
2.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3.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4. 신청 및 지원절차
5. 지원 중지, 환수 및 퇴거
6. 입주신청서 등 각종 서식
7. 운영 주체, 관리 방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거기본법」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또는 도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2.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 및 유지관리(보수 · 개선공사 등을 포함한다)
3.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홍보
4.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남형 만원주택 규모) 전남형 만원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로 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제6조(사업대상지의 선정) 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2. 공업단지, 산업단지 등 청년층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②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전남형 만원주택의 사업자) ① 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개발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 설립한 법인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전남형 만원주택 공동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격) ① 전남형 만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무주택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가능일(신축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거나 창업 등이 예정된 **청년층**
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등) ① 전남형 만원주택의 월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임대 기간 종료 또는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전남형 만원주택의 거주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지위가 변경되어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새롭게 거주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0조(만원주택 지원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2.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3. 제5조에 따른 규모
4.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5. 제7조에 따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자 선정
6. 제9조에 따른 임대료 등
7. 제11조에 따른 전남형 만원주택 위탁관리기관 선정
8.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운영·관리 위탁) ① 도지사는 청년층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도 주거복지센터
3. 그 밖에 전남형 만원주택의 운영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위탁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전남형 만원주택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제12조(업무협약) 도지사는 만원주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융기관의 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7조의 사업대상지 선정
2. 제8조의 사업자 선정
3. 제12조의 운영 또는 관리, 위탁
4. 그 밖에 청년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과정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1.] [서울특별시조례 제9086호, 2024. 1. 11., 제정]

1. 제정이유

○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인 상황이 지속**되고, 코로나우울(Corona Blue) 등으로 인한 학생의 정신건강 악화가 심화**되는** 등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

○ 더욱이 현재 정부가 심리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체계나 사업 등이 학교폭력, 자살(시도)와 같은 사안별로 구성되어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또한 최근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 중 하나로** 개인이 정신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리터러시(Mental Health Literacy)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학생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직무상 비밀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돕고자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 학생에게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학생은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상담, 치료 등을 포함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서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말한다.
5. "학생 정신건강교육"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건교육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관련 조례에 따른 교육

③ 교육감은 정신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3.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
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교육 운영 방안
5.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학생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지원 및 교직원, 보호자 연수 방안
7.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

3. 교직원,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생 정신건강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홍보 및 학생·교직원·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자료 개발

3.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 협의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계에서 종사하는 사람

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4138호, 2024. 1. 16., 제정]

◇ **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공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공기업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구성하는 분야별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 업무협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공기업의 범위(제2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국가공기업의 범위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나.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 사항(제3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공기업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국가공기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정함.

다.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제4조)

1) 분야별 발전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가, 그 위원은 국가공기업의 지사장·지점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국장급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장,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 ·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분야별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공기업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조(국가공기업과의 협조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전북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북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한동훈(법무부장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0-26~2023-12-05)

◇ 개정(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의 의무적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청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 청구 절차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신청 요건을 갖추고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경우 검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2)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고지**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③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죄는 제외한다)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제22조의2(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 청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의 신청 전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제22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되, “수용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 환경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6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개정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23.12.14. 시행]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0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1-15~2024-01-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개정문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 · 교구 및 도서 · 벽지 · 농어촌지역 등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3.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영유아의 외부 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지원

가. 교통비 및 숙박비

나. 기타 필요한 비용

5. 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확보

6.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7.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8.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와 연수경비 지원

② 국가는 도서 · 벽지 · 농어촌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도서 · 벽지 · 농어촌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유아보육법」[2023.12.14. 시행]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8. 12. 24., 2019. 4. 30.,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76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축·용도변경 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4조의6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의7 및 제6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 · 도경찰청장 및 시 · 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 ·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제65조의5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를 "지방건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를 "따른 조치 명령(개축 · 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

면“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으로, “빈집을 철거할“을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의5제4항 후단 중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를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 고시하거나, 시장 · 군수 · 구청장 외의 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5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2024.7.3. 시행]

제2조(정의) 제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2.]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1-02~2024-01-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 · 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 개정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 · 판매실적 · 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며, **시 · 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 · 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 ·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 · 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 ·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 개정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소행성 · 유성체 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오염사고 · 다중운집인파사고“로, “미세먼지 등으로“를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등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군·구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시·도위원회에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구위원회에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시·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의“를 “5년마다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를 “5년마다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부집행계획을“을 “매년 세부집행계획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따라 시·도의“를 “따라 매년 시·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따라 시·군·구의“를 “따라 매년 시·군·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4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

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를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2제4항에“를 “제25조의4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에“를 “제25조의4제1항에“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 · 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 · 도위원회“로 본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2항“을 각각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의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이 참여“를 “주민과 관련 기관 · 단체가 참여“로 한다.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 ·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시 · 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

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1-08~2024-01-17)

◇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을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이하 “검사대행지역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검사대행지역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승강기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제5호 중 “제1항”을 “제3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지정검사기관

의 지정신청을 할”을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모집에 응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5의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38조제1항 중 “제37조제2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80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중 “제37조제1항”을 각각 “제3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하도록 함.

◇ 개정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⑮ 생략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부 칙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온종일 돌봄체계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정 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1-10~2024-1-24)

◇ 제안이유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특히 세계 최저 출생률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더욱 커졌음.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돌봄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의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안 제6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바.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함(안 제10조).

사.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 시설을 인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 · 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학교 또는 교육감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며 고용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온종일 돌봄시설 최소 운영기준을 설정함(안 제12조).

자.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해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5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장애인의 자녀 등에게 온종일 돌봄을 우선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타.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파.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야 하며(안 제18조),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19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국회도서관, 제238호, 김지현 · 안성경 · 조경희 · 최서지)

□ 배경

○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입법례를 소개한다.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유럽연합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금지'보다는 '확산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 및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의 위험 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2018년 「정부조작대처법」을 통하여 선거기간 동안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중단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EU집행위원회가 2021년 발의한 'AI법(안)'과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 등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와 출처를 밝히고**, AI에 의해 생성·조작된 콘텐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강화**: 미국과 독일의 각 주(州)법률과 EU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프랑스 「교육법전」 등에서는 정보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racy):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154호, 2023.1.3. 일부개정)

□ 도입

○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최근 새롭게 생겨난 개념은 아니며 기존부터 존재해온 개념이다. EU집행위원회의 통신문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또는 '의도적으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생성·제시·유포되는 확인가능한 허위의 정보 또는 오도(誤導)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현상으로, 각국은 자국의 입법 상황에 맞게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형법, 불법행위법, 정보통신 관련법, 선거관련법 등 각각의 법률을 통해 규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그럼에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오프라인 환경과 달리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등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이다.〈그림1, 2참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일단 확산되면 그 피해는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고, 특히 선거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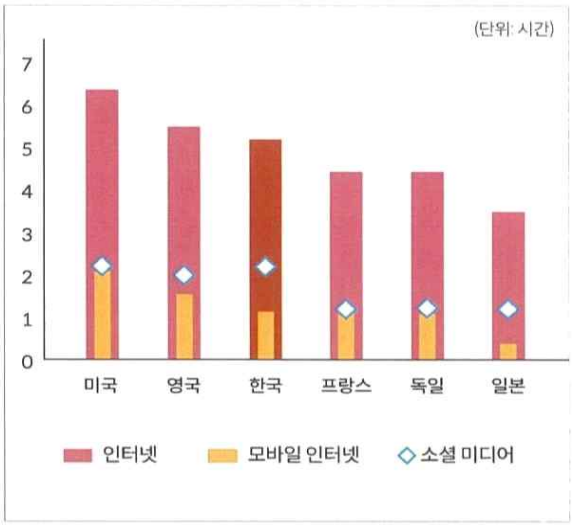
○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한 경우라도 **'불법콘텐츠'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이다. 따라서 **최근 유럽국가들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입법방식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불법콘텐츠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적법하지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접근차단 등의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 **미국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있어서 규제 입법보다는 주법률을 통하여 정보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1 디지털 뉴스의 주 이용경로 변화 (2017-2023년 한국)[6]



그림 2 국가별 인터넷, 모바일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 일일 평균시간(2019)[7]



□ 우리나라 입법 현황

○ 우리나라는 일정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금지·규제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2조의4, 제250조 등)

○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 불법콘텐츠 및 일부 유해한 콘텐츠의 게시·배포·판매 등을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최근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등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은 허위조작정보나 딥페이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디어교육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 허위조작정보는 법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해외입법 사례에서도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허위조작정보: 영국 하원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란 피해를 주려는 목적 또는 정치적·개인적·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정보이용자를 기만하고 오도(誤導)할 의도를 가지고 생성·공유되는 '거짓 정보' 또는 '조작된 거짓 정보'(false and / or manipulated information)이다.

○ 최근에는 규제 필요성 관점에서 허위조작정보란 민주적 정치·정책 과정, 선거 과정, 공공안전, 공중보건 등에서 일반 공중에게 피해(공공피해)를 주는 유해한 정보를 의미한다.

○ **오(誤)정보와 '악의적 정보'** :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오(誤)정보(misinformation),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를 각각 구분해 보면 오(誤)정보 즉 잘못된 정보는 오도(誤導)할 의도 없이 확산된 확인가능한 허위정보로서 종종 이용자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유되는 정보이다. '악의적 정보'(malinformation)는 허위가 아닌 사실이지만 유해성을 가진 정보이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뉴스형태 해당 여부 외에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EU와 영국은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誤)정보의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 **불법콘텐츠**: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콘텐츠'(illegal content)와 구분된다. 불법콘텐츠는 범죄에 해당되는 콘텐츠이지만, 허위조작정보는 그 자체를 규제·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한 '적법하지만 유해한 콘텐츠'(not per se illegal, but harmful)에 해당되고 불법콘텐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콘텐츠를 형식에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라 ‘그 자체로 불법’이거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정보로 규정한다.

○ **유해콘텐츠**: ‘적법하지만 유해한 유해콘텐츠’와 ‘허위조작정보’는 범죄에 해당되는 불법콘텐츠는 아니지만 일반 공중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성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콘텐츠의 허위 여부와 내용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통상 유해콘텐츠 안에 허위조작정보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참고〉

그림 3 유해콘텐츠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18]



□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 2016년 미국 대선과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가 사회 전반에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각국은 자국의 입법 상황에 맞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를 마련하였다.

○ 프랑스는 일정 선거기간 동안 투표 관련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EU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규제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미국, 영국, 일본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범죄에 해당되는 불법콘텐츠가 아닌 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게시·유포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미국은 정보이용자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사실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州)법률을 제정하였다.

표 1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규제 관련법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법
미국	미국 주법 - 캘리포니아주: 선거 딥페이크 규제	미국 주법 - 뉴저지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EU	「디지털서비스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영국	「온라인안전법」 - 허위조작정보 자문위원회 설치	「온라인안전법」 -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명시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 - 「선거법전」 선거기간 중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투명성 의무	「정보조작대처법」 - 「교육법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 소셜네트워크 사업자 불법콘텐츠 규제	독일 주법 - 브레멘주, 자를란트주 등

미국

1. 개관

○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불법콘텐츠가 아닌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연방차원의 법률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각 주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입법보다는 허위조작정보를 구별하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분석력을 갖게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교육 입법에 보다 적극적이다. 특히 뉴저지주와 델라웨어주 등은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 캘리포니아주는 선거후보자와 관련된 ‘딥페이크’(Deep fake)를 법률로 규제한다.

2. 뉴저지주(州)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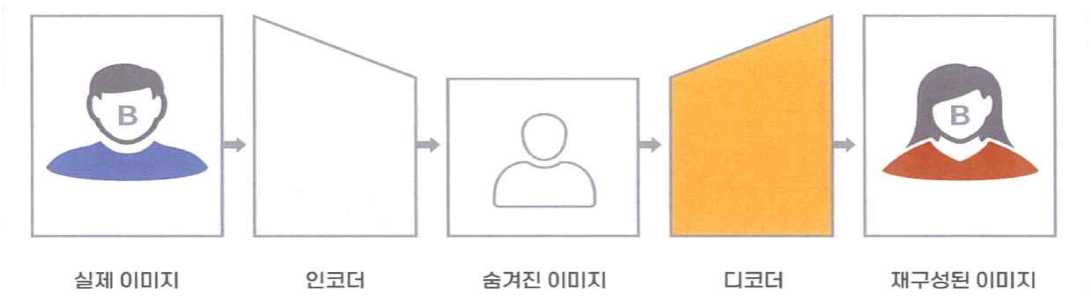
○ 뉴저지주(州)는 2023년 입법을 통하여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의무화하였다(법률 제18a편(교육) 제18A:7F-4.4조).

- ‘정보 리터리시’(information literacy)란, 개인이 정보가 필요한 시점을 인식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이다. 정보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각 미디어, 문자 및 기술 리터러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뉴저지주(州)교육위원회는 비판적 사고, 사실・관점・의견의 차이점 등에 대한 정보 리터러시 학습표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각 교육구는 유치원~12학년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정보 리터리시 교육을 포함시켰다.

3. 캘리포니아주(州)의 선거기간 딥페이크 규제

○ “딥페이크”란 해당인이 실제로는 행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마치 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AI에 의해 조작된 콘텐츠(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를 의미한다. 〈그림 4 참고〉

그림 4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얼굴 조작[24]



○ 캘리포니아주(州)는 선거법전 제20010조에서 ‘실질적으로 기만할 정도의’ 선거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유포를 규제하고 있다.

- 일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 60일 이내 선거후보자의 평판을 해할 의도로 또는 후보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투표자를 기만할 의도로, ‘실질적으로 기만할 정도의 후보자 시청각 미디어’를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는 것을 규제한다.
- 그러나 해당 콘텐츠(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가 조작되었음을 투명하게 공개한 경우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이미지(비디오・오디오)는 조작되었다(This___has been manipulated).” 라고 명백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 등이 선의로 뉴스, 뉴스인터뷰 등을 방송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만할 정도의 시청각 미디어’를 방송한 경우라도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분명하게 해당 미디어의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밝힌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바이든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

○ AI 투명성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30일 바이든행정부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개발・이용에 관한 행정명령’(EO 14110)을 발표하였다.

- 행정명령은 책임감 있는 AI 사용이 세상을 보다 생산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에 ‘합성 콘텐츠’(Synthetic Content)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합성 콘텐츠’를 식별하는 능력과 라벨링을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와 출처를 확실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 연방 상무부장관이 워터마킹 등을 이용한 합성 콘텐츠 표시에 대한 기준, 기술, 방법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디지털 콘텐츠 진위와 합성 콘텐츠 식별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1. 개관

○ EU는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허위조작정보’또는 ‘오(吳)정보’의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8년에 이어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업체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실행강령에 서명한 업체는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isital Services Act: DSA)을 제정하여,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에게 불법콘텐츠가 될 수 있는 시민 담론, 선거 과정, 공공 안전, 공중 보건의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 상 위험을 감경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행하도록 규정 하였다.

2. 「디지털서비스법」

○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전문(前文) 외 법률 본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위험평가의무 및 시스템 상 위험과 관련하여 ‘네 가지 범주(①~④)의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중 불법콘텐츠(범주①) 외 유해콘텐츠(범주②~④)가 허위조작정보가 해당될 수 있다.

① 형사 범죄 등과 관련되는 불법콘텐츠(아동 성착취물, 불법 혐오표현 등)의 유포

② 기본권 행사(인간존엄, 표현의 자유, 아동 권리 등)를 실제적·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콘텐츠

③ 민주적 과정, 시민 담론, 선거 과정, 공공 안전에 실제적·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④ 공중 보건 보호에 실제적·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 EU 내 월평균 활성이용자수 4,5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포함)은 알고리즘, 추천, 광고 등의 해당 시스템이 불법콘텐츠 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등 유해한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제34조). 또한 '콘텐츠 조정'이나 딥페이크 공개와 같은 위험감경조치(mitigation measures)를 마련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제35조). 또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6개월마다 투명성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제42조)

3.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 2010년 제정된 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AVMSD)은 당초 TV콘텐츠나 OTT와 같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적용되었다. 이후 TV방송과 인터넷서비스의 융합으로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2018년 개정을 통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서비스' 상의 '이용자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에도 적용되었다.

- 지침에 따르면 동영상 공유플랫폼 제공자 등은 불법콘텐츠 또는 유해콘텐츠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가 효과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안 및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제28b조).
- 각 회원국은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개발' 방안을 채택하여 촉진해야 하며, 2022년 12월 19일 이후 매 3년마다 EU집행위원회는 보고서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도록 하였다(제33a조). 2023년 2월 23일 EU집행위원회의 관련 통신문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각 회원국의 법적·정책적 조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커리큘럼을 포함한 인식제고 활동 등이 포함된다.

4. ‘AI법(안)’ (Artficial Intelligence Act)

○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AI 시스템의 요건을 규정한 ‘인공 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이하 ‘AI법’)의 법안(초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2023년 6월 14일 EU 의회는 AI의 위험성 규제를 보다 강화한 의회수정안(이하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 수정안은 딥페이크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라벨링을 규정한다. 딥페이크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사용자는 적시에 적절한 방식과 분명한 시각적 방식으로 해당 콘텐츠가 AI 생성 콘텐츠이거나 조작된 콘텐츠라는 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수정안 제52조제3항).

영국

1. 개관

○ 영국 역시 불법콘텐츠가 아닌 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EU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허위조작정보 또는 오(吳)정보의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적극적인데 반하여, 영국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중보건 관련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 2023년 10월 26일 제정된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은 불법콘텐츠(illegal content)뿐 아니라 ‘적법하지만 유해한 유해콘텐츠’(harmful content)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 「온라인안전법」은 또한 영국의 통신위원회(Ofcom)를 위해 자문역할을 하는 ‘허위조작정보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정책 추진을 통신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였다.

2. 「온라인안전법」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내 불법콘텐츠뿐 아니라 유해콘텐츠에 대해서도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신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 단, 대규모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민주적 중요성을 갖는 콘텐츠’, ‘뉴스제공자 콘텐츠’, ‘저널리즘 콘텐츠’에 관한 보호의무가 부과된다(제17조～제19조).

○ ‘허위조작정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제152조).

- 자문위원회는 통신위원회(내부위원회 포함)에 (1)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및 오(吳)정보 처리방법 (2)「온라인안전법」제77조 관련 리스트의 ‘투명성보고서’(transparency reports) 제출에 있어서 통신위원회 역할, (3)「통신법」제11조(미디어 리터러시 촉진)에 관한 통신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한다.

○ 「2003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의무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 규정을 신설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추진을 통신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였다(제165조 및 제166조).

- 통신위원회의 임무에는 전자매체에 의해 공표된 자료의 성격·특성에 대해 일반대중이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내용이 포함된다(「2003년 통신법」제11조).

- 통신위원회는 「온라인안전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media literacy strategy)을 발표하여야 한다(「2003년 통신법」제11A조).

프랑스

1. 개관

○ 프랑스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오프라인 상에서 이미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27조, 「선거법전」 제L97조, 「형법전」 제322-14조 등을 통해 가짜뉴스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들을 입법한 바 있다.

○ 또한 프랑스는 유럽국가로는 드물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명 '가짜뉴스방지법'이라 불리는 「정보조작 대처에 관한 2018년 12월 22일 법률 제2018-1202호」(이하 「정보조작대처법」)이다.

○ 「교육법전」 제L332-5조에서 중학생 대상 교육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2. 「정보조작대처법」

○ 「정보조작대처법」 제1편제1조

- 「선거법전(Code electoral)」 제L163-1조를 신설하여 선거기간 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관련 정보에 관한 투명성 의무를 규정한다. 총선이 있는 달 1일의 3개월 전부터 투표당일까지 프랑스에서 일정한 이용자수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투표의 진실성을 위하여, 공공정책 토론관련 콘텐츠 홍보를 댓가로 플랫폼에 보수를 지급한 자연인·법인의 신원에 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선거법전」 제L163-2조도 신설하였다. 총선이 있는 달 1일의 3개월 전부터 투표 당일까지, 투표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특정 사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오도(誤導)할 수 있는 주장·비난을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고의적·인위적·자동적으로 대량 유포하는 경우, 검찰·후보자·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가처분

전담 판사는 유포 중단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정부조작대처법」 제Ⅲ편 제11조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처에 관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공공 질서를 침해하거나 「정보통신 자유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의 진실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또한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 특히 제3자를 위한 홍보콘텐츠로부터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조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알고리즘 투명성, 허위조작정보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계정에 대한 조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시행하도록 한다.

3. 「교육법전」

○ 2013년 「2013년 교육개혁법」 제53조를 통해 「교육법전」 제L332-5조를 개정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필수 교육내용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2018년 「정부조작대처법」(제Ⅳ편 제17조)을 통해서 다시 「교육법전」 제L332-5조를 개정하여 '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현행 「교육법전」 제L332-5조에서는 모든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경제·사회·기술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훈련을 포함하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1. 개관

○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독일의 법률은 2017년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이다. 이 법률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법콘텐츠'(rechtswidrige Inhalte)에 대한 신속한 삭제·접근차단 등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 독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불법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네트워트집행법(NetzDG)」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콘텐츠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 독일에서 교육은 주(州)의 고유 권한으로서 16개 주(州)에서 각각의 「교육법」과 「미디어법」을 두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미디어 능력'(Medienkom-petenz)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각 주(州)의 지방미디어청은 미디어 리터러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 「네트워트집행법(NetzDG)」

○ 「네트워트집행법(NetzDG)」에서 규제하는 '불법콘텐츠'란 「연방형법전(StGB)」의 제185조(모욕), 제186조(악의적 험담), 제187조(명예훼손), 제201a조(사진 등 촬영에 의한 사생활영역의 침해), 제269조(중요 증거자료의 위조)등이 포함된다.

○ 인터넷플랫폼(소셜네트워크)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며 국내 사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제1조제2항).

- 보도·편집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조제1항).
- 소셜네트워크 사업자는 불법콘텐츠 신고를 접수한 후, 법정기간 내에 삭제

또는 접근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조). 미조치 시 500만 유로 이하의 질서위반금(Geldbuße)이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부과된다(제4조).

-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는 계속 논란 중에 있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州)법률

○ 브레멘주(州)의 「미디어법(BremLMG)」 제47조에서는 주(州) 미디어 당국이 모든 브레멘주 거주자를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주 당국은 미디어 기술을 증진하기 위해 주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자를란트주(州)의 「미디어법(SMG)」 제60조에서는 주(州) 미디어 당국은 미디어 리터러시(Medien-kompeyenz)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당국은 스스로 책임을 지거나 제3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및 미디어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홍보해야 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인터넷을 통한 평생학습의 도구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훈련에 힘써야 한다.

○ 그 밖에 바이에른주(州)의 「미디어역량위원회 절차규칙(GO MR)」 제12조에 따르면 미디어 역량 위원회(미디어 리터러시 위원회)의 임무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홍보와 미디어 교육행사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1. 개관

○ 일본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처벌 또는 차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소관부처인 총무성이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규

제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규 제정을 보류하고 있다.

○ 일본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규제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의 실태 파악 등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2018년 10월 총무성 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이하 플랫폼 서비스 연구회)를 만들어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규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연구회'는 2020년 2월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 인터넷상 유해정보에 관한 대응보고서를 공개하였다.

○ 2022년 12월에 총무성은 '플랫폼 서비스 연구회' 아래에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대응기구로 비방·중상 대응 전문가그룹을 설치하였다. 비방·중상 대응 전문가그룹에서는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투고 삭제 등에 관해 집중 논의 하고 있다.

2. 「플랫폼 사업자 책임 제한법」

○ 허위조작정보의 피해자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제한법」에 근거하여 허위조작정보 게시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동법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 2022년부터 피해자가 신속하게 익명의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게시자 정보공개 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래에는 익명의 게시자 특정을 위해 가처분 명령제도르 실시하였으나, 가처분 명령을 받기 위한 절차가 엄격하여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비송사건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법」

○ 허위조작정보 인식 제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터넷 허위조작정보도 유해정보라는 점에서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유해정보의 하나로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플랫폼 서비스 연구회’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①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교육 교재의 작성, ② 모든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 정보 전달, ③ 교재의 자유로운 활용, ④ 전국적인 인식 제고 전개, ⑤ 교육 교재의 충실, ⑥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인식 제고 자율적 대응 촉진, ⑦ 허위조작정보 대응 포털사이트 제작의 7가지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상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에 해당되는 불법콘텐츠가 아닌 한** 유해한 경우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각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국의 경우 기존 법률에 추가하여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일반적이지 않다. 미국, EU, 영국, 독일, 일본 모두 불법콘텐츠가 아닌 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최근 유럽국가들**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금지·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불법콘텐츠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유해한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하여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우리 「정보통신망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넘어서 콘텐츠 접근차단 등** 일정한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험감경조치 시 온라인 플랫폼이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 법안 단계이기는 하나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법(안)’에서 딥페이크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시스템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조작된 콘텐츠라는 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합성 콘텐츠 표시 및 식별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도록 한 미국 바이든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우리에게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AI 생성 조작 콘텐츠에 대하여 조작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게시자나 관련 산업에 부담이 된다면 캘리포니아주(州) 법률과 같이 일정한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나 정치광고에 한하여 AI가 생성한 조작된 콘텐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의 강화

- 온라인 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생산자 및 정보매체의 신뢰성, 정보자체의 완성도 및 진실성을 파악하는 비판적 분석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향상시킴으로서 정보이용자 스스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 **미국의 상당수 주(州)법률**과 EU「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프랑스 「교육법전」**은 정보 이용자가 온라인 정보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비판적 분석력을 갖추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2023년 미국의 뉴저지주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 하였고, 프랑스「교육법전」은 중학교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 **우리나라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급**하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온라인 환경의 수 많은 정보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건전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법령 해석 사례

Ⅳ 법령 해석 사례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0590, 2023. 12. 15., 민원인]

【질의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함)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공무수행사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감사기구의 장(각주: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공공감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하며(공공감사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각주: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공공감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감사법 제27조 및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각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의 역할 또는 직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감사법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자료 제출 요구, 실

지감사, 일상감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함.)에 따라 '시민감사관(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감사법 제27조 및 해당 조례에 따라 '위촉' 한 자로서,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하지 않은 자를 전제함.)' 으로 위촉된 사람이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 에 해당합니다.**

【이유】

먼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공직자등**(각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각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등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수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려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공무' 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9. 12. 24. 회신 19-0481 해석례 참

조)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는바, 이와 같이 시민감사관이 같은 조에 따라 자체감사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는 활동은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활동'으로서 '법령에 따른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수행하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평가 등"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체감사 업무에는 감사 대상에 대한 "심의·평가 등"의 활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이러한 자체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제1호)·특정감사(제2호)·재무감사(제3호)·성과감사(제4호)·복무감사(제4호)로 구분하면서, 그 중 성과감사에 대하여 특정한 정책·사업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 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감사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감사'에 관하여 수감기관 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 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 업무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심의·평가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감사법제27조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감사활동의 수행 주체**이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비

밀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감사담당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감사활동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바(제3항), (각주: 2009. 9. 30. 의안번호 제1806204호로 제안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287회 제6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외부전문가로서 실지감사(제21조), 일상감사(제22조) 등을 포함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시민감사관은 감사기구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감사담당자로서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제20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제2조 제1호)하는 감사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참고로,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에는 ‘감사 참여’와 관련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팀장의 지휘에 따라 감사반원의 일원으로 감사에 참여하고, 감사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 중 감사보고를 위한 확인서·문답서 등 각종 감사관련 서류도 작성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각주: 2015. 3. 27. 법률 제13278호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 공직자 등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공감사법 제27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서 감사에 참여할 때 ‘감사담당자’로 간주되는 시민감사관의 경우 감사담당자와 같은 수준의 공정하고 청

렴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각주: 공공감사법 제16조에 따라 임용되는 감사담당자 및 공공감사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임용된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됨.)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따른 시민감사관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생 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23-1159, 2023. 12. 2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각주: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7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1호가목),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호나목),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제1호다목)로서 각각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각주: 업무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참조).)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각주: 문화 및 집회시설(제2호), 의료시설(제3호), 교육연구시설(제4호), 노유자시설(제5호), 수련시설(제6호)을 말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하 “일정규모 이상 시설”이라 함)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각주: 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된 공중화장

실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설치하거나 설치된 화장실로 논의를 한정함.)**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공중화장실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의 개념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아니라 해당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해당되는 화장실이 같은 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자 등 제한된 인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등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해당하지 않는 화장실도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 규정하여, 공중화장실등이 아닌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화장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

기 위하여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공중화장실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공중화장실법령에서는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등”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공중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면서도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보호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위해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지만 공중의 이용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정하여 공중화장실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각주: 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48 해석례 및 법제처 2007. 5. 18. 회신 07-0049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당시 같은 법 제3조의 적용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로 규정하려 하였으나(각주: 2001. 5. 8. 의안번호 제160761호로 발의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의안원문(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참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각주: “간이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6. 4. 28. 법률 제7934호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간이화장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제3조에 추가되었음.)로 수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화장실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화장실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연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중화장실법 제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한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 반드시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추후 해당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 설치하는 화장실이나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이미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화장실까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을 그 화장실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중화장실법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공중화장실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7조),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제7조의2), 시설점검(제12조) 등 공중화장실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폐쇄·철거명령(제13조) 등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1조제3호)하고 있는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되는 모든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공중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같은 법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6. (생 략)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3-0372, 2023. 12. 28., 전라북도 완주군]

【질의요지】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완주군 조례안”이라 한다)은 군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제1조)으로 하면서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소송’이란 군민이 당사자인 소송 중 완주군 공익소송 지원위원회가 군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목에

서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가목),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나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완주군조례안 제2조제2호의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사무가 완주군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확정하는 단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군민에게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송물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익(公益)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가 제한되는 외교·국방·사법(司法) 등의 국가사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소송'**의 소송물이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귀 군의 사무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귀 군의 공익소송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의 소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의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영역에서 공익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수단이 존재하는 점,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국가 차원의 법률 구조 수단이나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28. 의견제시 21-0261 참조).

따라서 군민이 공익보호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 등 관련)

[법제처 의견23-0390, 2023. 12. 28., 제주특별자치도]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도에서는 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가 같은 항을 근거로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1.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제주특별법 제354조제1항에서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곶자왈을 보전하는 사무는 제주자치도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도에서는 곶자왈을 보전하는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귀 도에서 그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도지사가 곶자왈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일부 지역을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곶자왈 보호지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야】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1.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_NEW PATH to Prosperity

-현대경제연구원(2024. 1.)-

Ⅰ. 개 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제시한다. 2024년은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익숙한 과거의 방법(old path)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내어야 하는 절실함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NEW PATH는 다음과 같은 국내 7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2024년 7대 국내 경제 트렌드 - NEW PATH to Prosperity		
성장	Nose Down on Growth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정부정책	Woes of the BOK	한국은행의 고민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Ⅱ.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1)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 (의미)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서 Nose Down(항공기가 정상 비행 중 기수가 내려가는 현상)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한국 경제가 진입을 시작**했다는 뜻을 내포한다

○ (주요 내용)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후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잠재성

장률이 급락하는 **주된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자본 축적의 저하**에 있으며, 특히 이를 보완할 질적 생산요소(기술혁신, 사회자본 등)의 확충 속도도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 우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의 이민제도 도입, 노령인구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질적 생산요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의 역할 분담 구조 확립,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계의 빠른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 (의미) 한국 경제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코로나 펜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며, 2024년은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내용) 현재까지 발표된 '23년 11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볼 때, 2024년은 제13 순환기가 시작되는 초기 국면에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 국면(회복기 → 호황기) 중 회복기의 모습이 예상**된다. 향후 **경기 회복의 양상은 수출이 주도**하고 점차 내수 부문으로 그 온기가 확산되는 경로가 전망된다.

○ (시사점)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조기 집행률 제고, 미시적 내수 경기 진작 등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국면 조기 안착이 절실하다.

3)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 (의미) **한국은행**은 미 연준(FED)의 피봇(pivot, 금리인하 시작), 실물경

기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 수준 확보 등의 동결 필요성으로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내용) 2024년 **2분기를 전후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었으나, 기후적 요인과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으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가계대출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 통상 한-미 간 정책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는 미 연준보다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시사점) 통화정책은 추세적 금리 인하 속에서 중앙은행이 다양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완급을 조절하되,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4)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 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 (의미)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유발되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의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내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주요 내용)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기록 중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당 노동생산성(취업자당 노동생산성, PPP 적용 US$)은 2021년 기준 전산업이 OECD 평균의 92% 수준, G7 평균의 86% 수준, 그리고 미국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생산성/제조업생산성 비율은 2009년 53.7%에서 2021년 47.5%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 (시사점) 노동력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 산학연 협력 확대, 실효적인 신산업 지향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의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이 요구된다.

5)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 (의미) 최근 미·중 경제블록화, GVC(Global Value Chain)의 DVC(Domestic Value Chain)로의 전환 등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불균형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 (주요 내용) 최근 국내로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inflow)은 정체된 반면 해외로의 FDI 유출(outflow)은 급증함에 따라 순유출 규모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OECD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FDI 순유출 규모는 2013년 155.5억 달러에서 2022년 484.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최근 글로벌 FDI 트렌드가 시장지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로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는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와 수출 등의 다른 섹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의 유출은 고용의 유출이고 고용 시장은 소비구매력에 중장기적인 파급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시사점)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에 허브 국가화를 도모하여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 (의미) 한국 사회가 2024년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 명시대로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내용)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3.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24년 현재 5,1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노령인구(65세 이상)는 2023년 950.0만 명에서 2024년에 1,000.8만 명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000만 명시대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나아가, 노령인구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30년에는 1,305.6만 명, 2040년 1,724.5만 명, 2050년에는 1,990.4만 명(정점 2049년 1,900.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 OECD 회원국(37개국) 중 2021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늘어가는 노령인구 추세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 급증 문제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고령층의 주거(서민형 실버타운 확충) 인프라와 공적·사적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스템 확보 등의 실효적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인구에 대한 노동력 활용 및 생산적 복지 확립 기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 [남북경협]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의미)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대결 기조 유지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각종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주요 내용) 김정은 시대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12.26.~30)를 통해 강대강의 정면승부 원칙을 유지하면서 '핵에는 핵' 원칙을 구하겠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북한은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하는 등 과시성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2024년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를 계기로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 굵직하고 중요한 선거들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은 중북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중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교류 확대 가능성이 있어 중북 간 움직임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 (시사점) 북핵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 및 중북 간 움직임에 모니터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북핵 대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검토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따른 지방행정의 검토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3. 12.)-

1. 논의 배경

□ 김포의 서울편입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확대

○ 2025년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에 따라 전국단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

- 김포는 한강 남쪽에 있으나 서울과 인천에 접하고 있어서 지리상으로 고립된 지리적 특성과 서울로의 출퇴근 시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임
- **경기도의 분도 추진과정**에서 지리적 교류가 없는 경기북도에 속할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경기남도에 속할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서울로의 편입 방식이 대안으로 대두**됨

○ **김포의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유형 중 하나인 **“구역변경” 에 해당**(<표1 참조>)

〈표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범위와 사례

경 우		관련 국내 사례	비 고
[1] 행정구역 경계 변경		생 략	지속적 연구 필요 (「지방자치법」 §5~§10)
[2] 행정구역 변경	[2-1] 읍·면·동의 타 시·군·구 편입		
	[2-2] 도의 자치시·군 → 특·광역시 자치구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진행중),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23完)	전자는 인천·부천·시흥·김포의 메가시티 논의 연장선
	[2-3] 특·광역시 구 → 도의 자치시·자치군	비현실적	고려할 필요 없음
[3] 행정구역 분할·설치	[3-1] 읍·면·동 수준	생 략	인구감소대응(compact city) 차원에서 선제적 논의 필요
	[3-2] 시·군·구 수준	인천시 자치구 신설 (기존 자치구 분할)	폐지 후 신규 설치는 행정구역 통합과 연계 검토 필요
	[3-3] 시·도 수준	경기남도·북도 분할(진행중)	
[4] 행정구역 통합 (「지방분권균형발전법」 §44~§61)	[4-1] 도·농복합 형태의 시·군 통합	'95.1~'14.7 청주·청원 포함 42개 도·농통합시 출범 (최근 동해·삼척, 목포·신안, 구미·칠곡, 전주·완주 논의)	최근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재논의, 군의 도농통합시 전환 논의와 연계
	[4-2] 도의 자치시 (군 포함 가능) 통합 → 대도시	마산시·창원시·진해시 통합('10完)	'94 이후 도 농통합 논의와 함께 진행 (함안군 일부 당초 포함), 도·농통합시와 다른 맥락으로 메가시티(특자체)에서 논의 필요
	[4-3] 광역통합 및 메가시티(특자체) 논의	부·울·경 이후 광역통합(부산·경남)	대구·경남, 광주·전남, 세종·대전, 접경권 등 특자체 연계 논의는 별도 진행 필요
[5] 행정계층 변경 (단층↔복층)		제주 기초자치체 폐지('06) 및 재도입 논의(진행 중)	특별자치시·도 논의와 병행 필요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3)

- 김포의 서울 편입은 경기도 분도에 따른 소속 광역지자체에 대한 결정과 그간 지속적인 정책이슈로 지적된 교통·생활권 불일치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구역변경”을 택한 것임
- 이는 기존의 행정구역의 유지를 전제로 한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지방자치의 제도와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인식에 기반한 결정임

□ **행정체제개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지자체 간 협력방식을 고려한 최적의 대안 선택이 중요**

○ **행정구역**은 생활권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정도의 적정규모가 아니라는 점들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1988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할시(광역시)의 설치와 도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광역행정의 분절성이 심화되었다는 문제인식 존재
- **1995년 도농복합시 도입**에 따른 다수의 시·군단위의 통합, **2009년 광역시·도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도와 무산,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2018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시도와 무산**, **2020년 이후 대구-경북, 대전-세종, 광주-전남 통합시도** 등 다수의 지방행정체제 변화 시도

○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의 변경과 같은 행정체제개편이 행정협력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행정체제 개편은 불발된 사례가 많고 추진비용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택해야 함**

2. 현행법상 다양한 지자체간 행정협력수단

□ **지방자치법상 행정협력 수단이 존재하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통한 합리적 선택필요**

○ 현행 「지방자치법」상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행정협력의 수단이 존재함

- 다만 법상 사무의 공동처리와 사무위탁이 존재하나 활성화되지 않으며, 연합방식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최근에 들어서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었으나 부울경의 출범이 불발됨

- 통합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이 1990년대 중반에 대거 이루어졌으나,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성사되지 못함

○ **연계할 사무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그 중 현재 지자체가 겪고 있는 최적의 해결 수단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표 2〉 지방자치단체 행정협력수단

행정구역의 변경없는 유연한 방식 ←→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구조적 방식 개별사무의 연계 ←→ 종합사무의 연계 추진비용 낮음 ←→ 추진비용 높음						
협력 수단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특별지방자치 단체	지자체 통합적 접근	지자체 권한특례 (특별법의 특례)
근거	지방자치법 제168조	지방자치법 제169~제175조	지방자치법 제176~제181조	지방자치법 제199~제211조	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97조~제198조
내용	• 지자체간 협의에 따른 규약을 통해 위탁사무 처리	• 2개 이상 지자체사무의 일부, 공동처리	• 2개 이상 지자체 사무의 일부, 공동처리 (법인격 지위)	• 특정목적을 위한 광역적 사무처리 • 규약에 근거하여 의회와 특자체 장을 구성	• 하나이상의 지자체가 합쳐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창설 • 중심도시에 인접지역의 편입 • 도·농복합 형태의 시·군 통합 • 도의 자치시 (군 포함 가능) 통합 → 대도시 • 광역통합 및 메가시티 • (특자체) 논의	• 대도시,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따른 권한부여 • 세종, 제주,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사항 부여
방식	• 지방의회의결 불필요	• 지방의회의결 불필요 • 기초협의회는 광역보고, 광역협의회는 행안부 장관 승인	• 지방의회의결 필요 • 기초조합은 광역승인, 광역조합은 행안부 장관 승인 • 2개 이상 구역을 거친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사항	• 지방의회의결 필요 • 행안부 장관 승인사항	• 법률제정필요 • 분할폐치, 구역변경, 명칭변경: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시 생략) • 경계변경시 지방의회 과반수출석, 2/3 이상 동의	• 서울, 세종, 제주: 법률에 따른 특례 • 50만 이상 특례시: 대통령령
권한	계획권, 집행권, 예산권 없음	계획권, 집행권, 예산권 없음	계획권, 집행권 제한적으로 존재	계획권, 집행권, 예산권 있음	계획권, 집행권, 예산권 있음	종전보다 더 큰 계획권, 집행권 예산권 보장
기관 설치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필요	–
사무 처리범위	비제한	비제한	제한	비제한	비제한	–
법적 구속성	중간	미약	중간	강력	매우강력	–
체제 개편 비용	없음	없음	조합설립에 따른 파견인력 운용 비용, 사무관리비용 부담분	단체구성, 의회구성에 따른 인력배치, 관계법 개정	기존 광역-기초변화 시군구 지위변화에 따른 지방세입구조, 지방재정교부제도 근본적 변화	

* 자료 : 금창호(202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통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얻어내자**는 의견이 쉽게 선택되는 데에는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맥락이 존재(김대욱, 2023;김병준, 2022)
- 중앙집권형 구조에 따른 지시와 복종의 행정문화와 지역권력의 불균형,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협상과 협의를 통한 갈등관리의 역량 미흡
- 동시에 다수의 기존 협력제도의 한계가 축적되어 있어, 확실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선호

• **사무위탁**은 협오시설 설치의 경우 지역이기주의와 결합하여 지방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의견 수렴절차의 미비, 관련 세부절차의 미흡, 정보공유체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조합**은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인력이 순환근무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재정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재정 운영권이 없어 사업수행의 한계

•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각광을 받았던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경우, 추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른 추진동력 상실과 특행기관과의 업무중복, 지역 간 헤게모니 다툼, 향후 행정통합의 걸림돌 우려로 인해 좌초

○ 특히 **통합식 접근**은 단기간에 통합추진이 이루어질 것처럼 전개되지만 최종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는 양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대응이 중요**함

-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논의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역 내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연기됨
- 논의가 진행될수록 주민의견 수렴없는 하향식 방식이라는 비판과 추진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이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주민의 낮은 관심과 공감대 확보 실패의 양상이 반복됨
- 통합 불발에도 최초의 통합합의에 근거하여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제도적 지원사항

□ 행정체제개편시 일반법과 특별법간 조화 필요

○ 최근의 중요한 행정체제개편 변화는 특별법 형태로 추진되어 일반법

기반의 일반자치와 관계정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일반법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음
- 과거 세종과 제주의 출범뿐 아니라 최근 2년 사이에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4개의 시·도가 특별자치라는 이름을 사용 중임
- **특별법**은 **비교적 제·개정이 쉽고,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의 지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법체계를 복잡하게 하며 통일성과 조화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관계 법제정비를 통한 일반법의 체계와 특별법상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제 통합) 일반법인 「지방자치법」과 특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산된 체제의 일원화 검토가 필요함
- (지방지치법 개정) 현행의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된 법제**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광역단위인 시·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여 **광역통합의 방식과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기능적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해외국가**는 **행정체제 개편과 기능통합의 두 가지 방식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음

○ 물리적 개편 시 「지방자치법」 제5조의 개별개편방식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 개편 시 발생하는 갈등관리체계의 구축: 개편의 추진원칙, 갈등조정방식의 명시화, 개편추진기구 구축, 개편추진기구 결정에 대한 강제력과 이의 신청절차의 마련

○ 기능적 통합의 경우, 해외 초광역협력 사례의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

- **타 광역권과의 협력 연계망 구축**이 핵심인데 이러한 과정은 교통의 권역 내 내부연결망 확보, 서울방향의 교통망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국토연구원, 202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담보하지 못하는 **초광역권 교통망 구축 필요**
-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2.0,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초광역권 육성과제와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 필요(국토연구원, 2022)
- 지자체 행정구역을 넘어선 현행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과 자율계정 마련 필요

❍ 아울러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협력 제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행정협력에 관련된 기구의 조직운영의 자율성 부여 필요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립 촉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부여 필요
- 행정협력의 중복지출을 막기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 필요

3. 2024년 국제정세 전망

-세종연구소(2024. 1)-

1.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

○ 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할 전망이다.

○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 **둘째, 신냉전 진영화 추세의 심화**다. 이미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에 더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은 서구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초래해 **세계질서가 빠르게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는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웨스트(Global West), 중·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이스트(Global East), 그리고 인도, 브라질 및 중간지대의 나머지 다양한 비서구 발전도상 국가들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삼분되는 양상이다.

○ **셋째, 글로벌 및 아태지역의 다양한 발화점(flash point)을 둘러싼 돌발 사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위협의 급진전에 의해 평화프로세스가 붕괴하면서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아태지역의 안보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일본을 비롯한 역내 각국은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군비경쟁 추세도 우려된다.

○ 이처럼 **2024년 국제정세**는 당분간 **뚜렷한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지금은 **지구촌 곳곳의 충돌 여파가 갈수록 연결되는 시대**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이후 지정학과 지경학의 경계도 갈수록 모호해져 가는 추세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혹은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현재 **새로운 신 양극체제**, 혹은 **새로운 다극체제**

질서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인다.

○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이끌고 갈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선의의 헤지몬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고, 중국은 헤지몬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됐다.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극단적 정치의 부상으로 **민주주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 현상이 만연**해 있다.

2. 국제질서 전망의 키 드라이버

○ 2024년 국제질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드라이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첫째, 미중관계의 향배**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은 무역 및 관세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치와 체제, 첨단기술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총체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정책의 재조정(recalibration)을 논의하면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본질적으로 미중 경쟁이 달라진 건 아니다. **디리스킹**은 미중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민감한 첨단 군사안보 관련 핵심분야로 좁게 한정**하여 그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이나 제품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제한은 좁게 하되 장벽은 높이겠다는 것(small yard, high fence)이 핵심**이다.

○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향후 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법, 영토주권 원칙을 위배한 것은 물론 OSCE 등 **다자체제를 통해 정립된 유럽의 갈등해소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든지 혹은 러시아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향후 유럽은 그 어느 나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셋째, 중동정세의 향배**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확전되고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이 가세하게 되면 중동정세는 걷

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동정세가 어지러워지면** 국제 **유가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곧 **글로벌 경제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넷째,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럽에 쏠린 틈을 타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무력통일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로 인해 대만에 대해 단기간 내 무력 사용은 안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다섯째, 한반도 상황**이다. 북한은 2022년초부터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에 집중하면서 중러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대화는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일체의 소통채널이 단절되면서 북한의 행보와 한반도 상황은 시계 제로 상태이다. 2022년 12월말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는 **핵무력정책의 법제화**를 중요한 성과로 평가한 후, **핵무력 건설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3. 한국에 대한 함의

○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면에서 두 가지 **특징**을 드러냈다. **첫째는 한국의 가치외교 정체성 부각**이다.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쓰는 언사들을 보면 자유, 평화, 법치, 인권 등 가치에 기반한 개념들이 많고, 윤 정부는 가치외교에 기반한 외교정체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전략적 투명성을 제고**한 점이다. 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리와 체제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확연히 강화**했다. 세계질서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유례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시대에 한국이 가치와 국익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로 인한 리스크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할 것인지가 과제**다.

○ **첫째,** 한국 외교의 가치 정체성과 전략적 투명성 증대로 인해 '가치와 체제가 다른(less like-minded)' 국가들, 특히 **중·러로부터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와 협력을 강화하더라도 한국에게 글로벌 이스트는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악화되면

한국과 중·러와의 관계도 경색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도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향후 중·러에 대해 가치와 시장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 강압외교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한국이 글로벌 웨스트와 연대할수록 북·중·러 연대도 강화되는 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도 증대**될 것이다.

○ **셋째, 파편화된 질서 속에서 진영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란스런 국제질서 속**에서 **외교가 할 일은 리스크 분산이 핵심 과제**이다. 가치와 국익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믹스한 국가전략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과의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을 선언한 유럽의 고민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적인 경제적 충격이나 경쟁국의 정치·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탄력성(resilience)을 어떻게 키울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 **넷째,** 국제질서가 진영화로 재편되는 것이 추세라면 **한·미·일 3국 협력을 정례화**하는 한편, **한·일 양자협력을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한·일 공히 국내정치적 이유로 한일관계 부침을 겪었던 그간의 경험을 감안하면 한·일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에 전개될 국제질서**는 어떤 것일까?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향후 국제사회가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를 대체할 **다자적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없이는 새로운 진영체제로 대결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서구사회**는 왜 자유주의 국제질서,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좋은 건지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한계를 노정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배타적이고 이중적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아직 중국식 모델을 따를 확신도 없는 것 같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대신 글로벌 차원에서는 **비자유주의적 분파주의(illiberal particularism)가 도처에서 횡행**하고, 국내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퇴행이 뚜렷한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국제질서에 합의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나선다

-전라남도(2023. 12. 28.)-

-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너지 분야 '한국판 실리콘밸리' 속도-

○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계획 공모에 선정돼 세계 최초로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추진, **에너지 분야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전남도는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추진 사업계획을 지난 9월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정부로부터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을 받았다.

○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국제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로 AC 전력계통망 포화에 따른 접속 지연, 출력 제한 등 문제점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에너지안보의 선제적 대응과 전력 수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공모에는 14개 시·도에서 18개 과제를 지원, 1차 서면평가를 통해 8개 과제가 선정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4개 시·도 4개 과제가 선정됐다.

○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1천2억 원(국비250·지방비 415·민간 337)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 직류기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위해 핵심지구와 연계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된다.

○ **1단계**로 2024~2027년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국내 실증을 위한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구축**한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 힐스(HILs) 장비를 활용 직류(DC)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환경 변화를 모의실험하고 독일, 베트남 등 해외실증거점과 연계해 글로벌 표준과 기준을 마련한다.

○ **2단계**로 2028~2029년 서남권 8.2GW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실증결과를 적용**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직류전력망 상용화 상업화 모델 개발 및 성과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 전남도는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로 세계 시장 점유율 10%, 세계 1등 제품 3개 선점, 유니콘 기업 1개사 육성을 목표하고 있다. 10년 후 직류 배전 전력기기 및 운영기술의 글로벌 시장 10% 점유할 경우 약 47조 8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전남도는 정부 공모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전담반(T/F팀)**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해외 협력 방안, 네거티브 규제 발굴, 실증체계 정립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왔다.

○ 전남도지사는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류 배전 기술의 국제표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 고정밀 항공사진 · 영상 201건 자체 제작해 도정 업무 활용

-충청남도(2024. 1. 14.)-

○ 충남도가 자체 보유한 무인 비행장치(드론)로 도정 업무에 필요한 고정밀 항공영상・사진을 제작・활용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도에 따르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등 도정 역점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입지 분석과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고정밀 항공사진 및 영상이 필요하다

○ 이에 도는 **외주 용역 대신 드론 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이 직접 촬영・제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했다

○ 구체적으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스마트팜 농업 육성지구 △지방도 선형 개량 공사 및 보상 업무 △내포신도시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등의 개발사업에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해 201건(동영상 158건, 항공사진 43건)의 자료를 촬영・제공했다

○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드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도시군 드론 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드론의 행정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 아울러 올해는 그동안 드론행정 활성화에 앞장서며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시군 상징물(랜드마크) 중심 360° 가상현실(VR) 파노라마 구축 △가로림만 디지털 갯벌 지도 제작 등 선진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 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뛰어난 드론 운용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라면서 “도정 중요사업의 입지 선정,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부서 등에 드론 영상・사진 지원을 지속하고 기술적 역량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3. 경남도, 전국 최초 자율담당제 본격 시행

-경상남도(2024. 1. 5.)-

- 전 실국에 조직운영권 부여, 부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일하는 조직, 성과중심 조직으로 도민 요구에 최우선 대응

○ 경상남도가 민선8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전국 최초로 **전 실국 자율담당제를 본격 시행**했다

○ **‘자율담당제’**는 기존 담당직제를 폐지하고 **부서에 직급별 인력과 분장사무만 배정**하여, **부서장이 부서의 운영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경남도는 민선 8기 박완수 도정 출범과 함께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위해 **2022년 8월 4일부터** 5국 24과·단을 대상으로 **담당직제 폐지**를 **시범 운영**했다.

○ 시범 운영 결과 **도정 현안사업 대응력이 높아졌으며**, 사무관 이상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로 2023년 중앙단위 기관평가에서 총 61건을 수상하는 등 행정, 안전, 경제, 환경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 이에 경상남도는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맞추어 전 실국을 대상으로 자율담당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 자율담당제의 추진으로 **부서장은 업무별로 담당형, 파트형, 독립형 등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 중 해당 업무가 완료되면 언제든지 다른 팀을 구성하는 등 더욱더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공동수행이 필요한 업무**는 **별도 파트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핵심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 2024년 1월 시행 현재, 총 70개 부서에서 담당형 141개(39.5%), 파트형 199개(55.7%), 독립형 17개(4.8%)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지속가능발전', '스마트재해', '농식품직거래' 등 도민과 직결되는 17개 업무는 행정수요의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독립형으로 운영된다.

○ 이번 자율담당제 시행으로, 전형적인 조직문화 등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수평적 도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와 책임중시**, **▲도민의 요구에 최우선 대응**,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도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경남도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남도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율담당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담당제 우수부서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성과 중심의 활기찬 도정을 위해 앞으로도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도민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민선8기 도정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자율담당제 시행에 적극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수산물 출하 전 신속검사를 위해 장비 및 인력의 합리적 배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상수산위원회(2024년 예산안 분석/2023. 10.)-

가. 현 황

○ 해양수산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 위공판장에 출하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수협)이 보유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는 총 137대**이다. 이 가운데 **실험실용 정밀분석 장비**(감마핵종 분석장비, 베타핵종 분석장비 등 고정형)는 **총 42대**로, 해수부가 15개, 지자체가 23대, 수협이 4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동형 측정장비는 총 9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휴대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방사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실험실용 정밀분석 장비에 비해 검사 결과의 정확도는 낮은 편이다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 보유 현황]

(단위: 대)

단 계	운영주체	2023.8월말		
		실험실용 정밀분석 장비	이동형 측정장비	계
생산단계	해수부	15	14	29
	지자체	23	33	56
	민간(수협)	4	48	52
합 계		42	95	137

주: 1. 식약처 등 타부처 보유장비는 제외함
2. 2023년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도에 방사능 분석 장비 수량을 늘려왔지만, 지역에 따라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위공판장에 방사능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도입할 분석 장비와 검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및 수협 등에 지원하는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 도입 물량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민간검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판 물량이 많은 위판장에서 출하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유통 전 신속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시료채취 시점부터 분석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매가 종료되어 시중에 출하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 위공판장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검사 절차를 살펴보면, ① 먼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이 위공판장에 쌓인 수산물 중에서 검사 대상을 골라 시료를 수거한다. ② 수거된 시료는 차량으로 일정거리를 이동하여 방사능 검사 장비가 있는 실험실로 이송된다. ③ 시료의 가식부만 1kg 이상 절단한 후 분쇄하여 균질화시킨 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시료 내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게 된다. ④ 검사결과는 위공판장 관계자 등에게 통보된다
- 방사능 분석장비 도입 사업을 통해 수산물 출하 전 검사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려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 선정부터 검사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평균소요시간은 1일 15.5시간이 소요**되었고, 가장 적게 소요된 경우가 약 4시간이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2일 15.5시간이 소요되었다

[2023년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소요시간]

구분	사업명	검사절차	소요시간		
			평균 소요시간	최장 소요시간	최단 소요시간
생산 단계	수산물 위생관리 (방사능 검사 장비 지원)	검사대상 선정→시료수거→ 시료송부→시료전처리→ 실험실 분석 →결과처리 (관계자 통보 등)	1일 15.5 시간	2일 15.5 시간	4시간

주: 식약처 등 타 부처 감사실적, 휴대용 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실적은 제외함
자료: 해양수산부

- 이처럼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출하 전 신속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의 경우 검사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 사례가 4시간인데 위공판장에서 경매 소요시간이 평균 2시간이라고 보면, 일부 지역은 검사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수산물을 시중에 출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22년 및 2023년도에 분석 장비를 늘려 왔고 2024년도에도 8대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며,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또한 증원(56명 → 81명)하는 등 방사능 검사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데 있다. 검사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검사결과가 나오기전에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지역의 경우 위공판장으로부터 분석장비가 있는 실험실까지 거리가 멀어서 이동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전국에 소재한 위·공판장은 모두 220개**에 이르므로, 방사능 분석 장비 구입 예산과 검사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분석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별 위공판장 수, 수산물 출하량, 위공판장에서 방사능 분석 실험실까지의 이동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장비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 종합해 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연도에 방사능 분석 장비 도입물량을 늘려 왔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바, **방사능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지역별로 빈틈없는 방사능 검사를 위해서**는 2022년부터 내년도까지 **도입하게 될 장비와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점검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년 예산안 분석/2023. 10.)–

□ 현황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46억 4,300만원 증액된 6,85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 감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290,963	685,606	394,643	135.6
하절기바우처	47,143	48,805	60,950	12,145	24.9
동절기바우처	156,267	142,365	600,521	458,156	321.8
연탄쿠폰	23,600	21,712	21,240	△472	△2.2
등유바우처	1,674	1,395	1,023	△372	△26.7
사업운영비	1,872	1,722	1,872	150	8.7
등유·LPG지원금	0	74,964	0	△74,964	순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동 사업은 **하절기바우처, 동절기바우처,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24년에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동절기 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세대별 30.4만원에서 31.4만원으로 인상하고, 하절기 바우처의 지원단가를 세대별 4.3만원에서 5.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 분석의견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단가 및 대상 확대로 예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가구별 총에너지 비용 중 정부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소요를 명확히 산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22년 말 이후 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2023년에 예비비 1,000억원을 재원으로 동절기 지원단가를 당초 세대 당 13.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23년에는 본예산 확정 이후 지원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2023년 예산으로 일부 기간을 지원하고(5~12월), 2024년 예산으로 나머지 기간(1~4월)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2023년 동절기 확대 및 2024년 지원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구분	2022년(2022.5~2023.4)		2023년(2023.5~2024.4)	2024년	
재원	2022년 추경예산	2023년 예비비 포함 최종예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2023년 동절기 확대	2024년 지원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기후민감 계층 포함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기후민감계층 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기후민감계층 포함 세대	
지원 세대	117.6만 세대	117.6만 세대	85.7만 세대	113.1만 세대	115.0만 세대
지원 단가	동절기바우처 : 13.2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4만원/세대	동절기바우처 : 30.4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4만원/세대	동절기바우처 : 15.2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4.3만원/세대	동절기바우처 : 30.4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4.3만원/세대	동절기바우처 : 31.4만원/세대 하절기바우처 : 5.3만원/세대

주: 기후민감계층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세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23년에 예비비로 지원단가를 인상한 이후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목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원단가를 인상한 이후 다시 인하하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특성**이 있어, **지원단가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재정소요**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24년에 당초 2,3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3~2027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24년 4,271억원, 2025년 4,417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재정 계획이 변경되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중기재정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2~2026년	230,556	185,739	232,427	304,986	418,402	-
2023~2027년	-	190,963	427,115	441,694	457,467	474,48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향후 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재정소요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대상 세대가 증가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2023년 9월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주거급여 세대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될 계획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일부 확대될 예정이다.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단가는 현재 가스비 등 에너지비용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일정 비율을 증가시키는 점증적인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중 동 사업을 통한 지원목표가 명확히 계획되어 있지않아 중장기 재정소요를 면밀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024년도 동절기 지원단가는 2024년 소득 1분위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추산액 60만 6,440원의 51.2% 수준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단가 인상이 중장기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지원단가와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단가 인상은 지원대상 가구별 총에너지 비용 중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한 정부 지원율 등을 명확히 계획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글로컬대학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재정지원 방식,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2024년 예산안 분석/2023. 10.)-

□ 현 황

○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37교)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42억원 증액된 5,722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방대학(대학혁신지원 사업 지원 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66교)이 지역과 연계한 강점 분야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75억원 증액된 2,375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대학(69교) 중 지방 전문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0억원 증액된 7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글로컬대학 지원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립대학육성사업	150,000	458,000	572,200	114,200	24.9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190,000	237,500	47,500	25.0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	60,000	75,000	15,000	25.0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2023~2026년 동안 과감한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30개의 지방대학을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신청접수(~2023.5.31) 결과, 총 94개 대학이 신청서(혁신기획서)제출하여 15개 예비지정 대학을 결정하였으며(2023.6.20. 발표), 예비지정 대학 중 본지정 결과는 10개 내외로 정하여 10월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지정규모 : '23년 10개 내외 → '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
  ※ '23년, '24년 10개 내외 지정, '25년, '26년 5개 내외 지정
- 지정대상 :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단일 대학이 단독 신청 또는 2개 이상 대학이 지원기간 중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 가능
- 지원사항 : 교당 5년간 약 1,000억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 연차별·대학별 지원금은 대학 규모,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 ('23~'24)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 공사립대는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 ('25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과 연계하여 지원방식 조정 검토
- 지정방식 :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 최종 심의

자료: 교육부

○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활성화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에 편성되었다. 일반재정지원 사업의 예산은 산식에 따라 지원하는 포뮬러 사업비(60%)와 대학의 개선 계획 평가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40%)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컬대학은 인센티브 예산에서 지원한다. **사업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평가**를 **'글로컬대학 평가+사업별 평가'로 이원화**하고, **인센티브 지원금 총액 결정시,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를 반영**한다

[글로컬대학 재원 관련 대학예산지원 방식 개편(3개 사업): 2023년 예산 기준]

국립대	국립대학 육성 사업	① 포뮬러 사업비 (60%, 2,741억원) (국립대 37교 전부)	②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1,827억)	
			글로컬대학	대학별 차등지원
사립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① 포뮬러 사업비 (60%, 1,140억) (지방사립대 66교 전부)	② 특성화 계획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760억)	
			글로컬대학	대학별 차등지원
사립전문대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① 포뮬러 사업비 (60%, 360억) (지방사립전문대 69교 전부)	② 특성화 계획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40%, 240억)	
			글로컬대학	대학별 차등지원

주: 운영비 제외
자료: 교육부

□ 분석의견

○ **글로컬대학 지원은 3조원이라는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식, 칸막이식 지원 방식 등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이 우려되므로,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글로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재정지원 방식, 성과관리 방안 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글로컬대학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및 경쟁력 강화라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의 목적 하에,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신설로 대폭 증액된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예산의 재정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 교육부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총액이 결정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은 교육부가 예산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며, 3개 사업의 인센티브 예산으로 글로컬대학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글로컬대학 지원 연도별 예산 규모(안)]

(단위: 교,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글로컬대학 수	10	20 (+10)	25 (+5)	30 (+5)	30
예산 총액	500	1,500	3,750	6,250	7,750
구분	2028	2029	2030	누적	
글로컬대학 수	30	30	30	30	
예산 총액	5,750	3,000	1,500	30,000	

자료: 교육부

- 그러나 **글로컬대학**은 **2023~2026년간 30개 대학을 선정**하여,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2023~2030년간 총 재정소요액은 3조원 규모로,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연차별로 2023~2024년 매년 10교 내외를 지정하고, 2025~2026년까지 매년 5교 내외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연차별 소요 예산은 2023년 약 500억원에서 2027년 약 7,750억원으로 증가하며, 2030년까지 3조원 내외의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 그리고 교육부는 기존 일반재정지원 사업 운영에서는 사후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해 성과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023년 글로컬대학 지원 정책 도입과 함께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운영 시 계획을 심사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업 수행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인센**

티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평가와 계획 불이행시에 부여되는 패널티가 설계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글로컬대학으로 국립대, 지방사립대(4년제), 지방사립전문대에 따라 칸막이로 구분되어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칸막이식 재정운용은 국립대, 지방사립대(4년제), 지방사립전문대 별 지원 학교수, 지원단가에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 지원은 2023년 신규 도입된 정책이지만 아직 지원대학 범위, 지원단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2024년 예산안에도 지원대학 범위, 지원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총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은 글로컬대학지원금과 대학별 차등지원금을 모두 지원받고 그 지원 규모가 큰 만큼,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의 인센티브 배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을 종합하면, 글로컬대학 지원은 3조원이라는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식, 칸막이식 지원 방식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2024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글로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재정지원 방식, 성과관리 방안 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미비 관련 사항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12.)-

□ 감사배경 및 목적

○ 청구인(A 외 392명)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제정되고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며 2023. 4. 17. 감사원에 아래와 같은 5개 청구요지로 공익감사를 청구

【청구 요지】

① 「기계설비법」 적용 관련 제반 시스템 정비 및 정책 지원 없이 방치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는 인원 확보 등 노력 없이 방치
③ 학교 현장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위한 인건비 미지원
④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 위탁용역 계약 미체결 및 용역비 등 미지원
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를 학교에 전가

○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2023. 8. 8. 청구인에게 이를 회신

□ 감사중점 사항

○ 공익감사청구서에 기재된 감사청구사항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에서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기한 내에 선임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

○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위 부처인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도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

□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 감사원에서 2023. 8. 17 부터 같은 해 8. 23 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원의 내부검토 절차를 거쳐 2023. 12. 1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기계설비법」 제정 배경 및 법령 요지

○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 4. 17. 제정

○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기계설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미이행 시 300만~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급 학교도 「기계설비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

【「기계설비법」 상 부여의무】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계설비법」 제19조)
② **유지관리 점검,** 반기 1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9조)
③ **성능 점검,** 연 1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 청구인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익감사청구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쟁점 및 경과

일 자	내 용
2020. 4. 18.	「기계설비법」 시행(2018. 4. 17. 제정, 의원 입법)
2021. 4. 1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차 선임기한 도래 [경기도 내 대상학교(3만~6만 ㎡ 건물): 8개]
2019. 11.~2021. 7.	전국 시·도교육청 의견조회 및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개최
2022. 4. 1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차 선임기한 도래 [경기도 내 대상학교(1.5만~3만 ㎡ 건물): 143개]
2022. 7. 19.	화성시 소재 4개 학교 과태료 부과(각 300만 원)
2023. 2.~현재	「기계설비법」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개시(국토교통부)
2023. 3. 21.	「기계설비법」 관련 경기도교육청 대응 방안 교육감 결재 * 임시 선임 또는 비상주 위탁 선임 중 학교가 자율 선택하고 예산은 추후 지원
2023. 4. 10.	1만~1.5만 ㎡ 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협조요청 (2023. 12. 31.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
2023. 4. 1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3차 선임기한 도래 [경기도 내 학교건물(1만~1.5만 ㎡) : 1,060개]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

(단위:건)

구분	합계	주의	통보
건수	2	1	1

- 감사결과, 5개 항목의 청구요지 중 2개 항목은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개 항목은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불문 처리
- 한편, 감사기간 중 감사청구 대상기관은 아니었으나, 경기도교육청 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업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각급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업무 지휘·감독 소홀** (청구요지 ①, ④ 관련)

■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관련 방침을 뒤늦게 수립하는 등 지휘·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내 425개 학교가 「기계설비법」상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법령을 위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업무혼선 해소를 위한 방침 마련 필요** (청구요지 ① 관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전국 1,150개 학교가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명확한 방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

○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앞으로 관내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에게는 「기계설비법」의 적용과 관련한 업무 혼선 및 법령 위반 상황이 반복·지속되지 않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관련 재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